

고소(고발) 접수증

고소(고발)인	김명호
피고소(고발)인	전주서외5
접수번호	2006 - 3/32

위 고소(고발)장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함.



2006. 4. 17
서울중앙지방검찰청
민원전담관실

①담당검사 및 사건번호는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3-4일 후 당청 지하1층 종합민원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고소인 본인은 신분증, 대리인은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)

②접수 후 연락처가 변경되면 담당검사실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필요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

(02)530-3114

고 소 장

고소인: 김명호,

피고소인:

- 1 대법원 경비 대장 전금식, >경비 관리 담당 김영수
- 3 이광범(사법정책실장),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, 137-750
- 4 이상훈(서울고법 판사),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-1, 137-735
- 5 이혁우(서울중앙지법판사),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-1, 137-735
- 6 홍성무(서울고법 판사)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-1, 137-735

제목: 2006 형제 24637 사건에 대한 맞고소 및 국제적 망신, 성대입시부정은 폐 방조하는 판사들 고소(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)

2006 형제 24637 사건과 병합, 아래 고소사유 및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고소인의 권리행사와 그의 침해

본인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망신을 시키고, 작금의 만연된 시험부정들을 조
토록 한, 사상 최대 입시부정사건, 95 년도 성대입시부정사건의 진상을 밝
힘으로 써(증거자료 1, Science, 조선일보 등 언론기사),

- 첫째: 공공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세우고
- 둘째: 개인적으로는 성대에 복직 등의

행복추구권리(헌법 10 조)를 행사하고 자 합니다.(증거자료 2, 공개편지)
위 행복추구를 위한 수단인,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(헌법 제 27 조의 제 3
항)가, 피고소인들의 교묘한 집단 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인하여, 침해 당
하고 있기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이 서류는 작성명의인 김명호 가
(주민등록번호: 570217-1066)가
제출한 것으로 틀림없음을 확인함
2006. 4. 17.
검찰주사(보) 김명호